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웰니스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웰니스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937
----------	-----

2025. 4. 30.(수)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 의 자 : 오영탁 의원 등 7인
- 나. 발의일자 : 2025년 4월 11일
- 다. 회부일자 : 2025년 4월 14일
- 라. 상정일자 : 2025년 4월 22일
 - 제4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의결)

2. 제안 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오영탁 의원)

가. 제안사유

-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웰니스관광의 육성과 지원을 통해 도민과 관광객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 지역 특성을 살린 웰니스관광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소득 증대 효과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충청북도의 지역 특성과 자연환경을 활용한 웰니스관광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 목적 규정(안 제1조)
- 웰니스관광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관광·보건·웰니스 분야를 융합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규정(안 제2조)
- 도지사의 책무로 웰니스관광 육성을 위한 종합적 시책 수립 및 추진 의무 규정(안 제3조)
- 웰니스관광 프로그램 개발, 기반 구축, 전문 인력 양성 등 웰니스관광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사업 내용 명시(안 제5조)
- 웰니스관광 관련 시설 및 관광상품의 지정 및 취소 기준과 지원 근거 규정(안 제7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신복순)

-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충청북도 지역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자발적인 지역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충북 고유의 특색 있는 문화를 발전시키며,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에서는 지역문화, 문화예술, 문화도시, 문화지구, 지역문화 전문인력 등 법령에서 정의한 주요 용어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

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로써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과 재원 확보 및 시책 추진의 의무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

- 안 제4조에서는 타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여 이 조례의 우선적 적용 범위를 설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는 5년 단위의 「충청북도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시행·평가 의무를 도지사에게 부여하고,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항목을 체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정책 실행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음.
- 안 제6조에서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항목을 열거하고, 법인 및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 기반을 조성하고 있음.
- 안 제7조부터 제15조까지는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구성, 기능, 위원의 자격 및 임기, 회의 운영 방식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위원회의 안정적이고 공정한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 안 제16조에서는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도지사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내 전문인력 확보와 역량강화를 도모하고 있음.
- 안 제17조에서는 시군 및 문화 관련 기관·단체, 민간기업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조항을 두어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기반을 조성하고 있음.
- 안 제18조에서는 지역문화진흥에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개인 등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여 유공자의 사기 진작과 지역문화 기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지역문화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도내 문화자원의 보존 및 활용, 고유 문화 콘텐츠의 육성, 문화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한 문화 향유 기회 확대,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현장 중심의 문화역량 강화, 시·군 및 민간과의 협력 강화 등 지역문화 진흥에 있어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
- 특히 도지사의 책무, 시행계획 수립, 위원회 구성 등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행정적 책임성과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였으며, 문화도시 및 문화지구 지정·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산업과의 연계 발전 기반 또한 마련될 것으로 판단됨.
- 결론적으로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을 충청북도 실정에 맞게 적용하여, 자발적 문화생태계 조성, 문화권 보장 등 지역문화 정책의 실질적 운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
- 이를 통해 충청북도 고유의 문화자산을 보존하고 문화정체성을 강화하며, 문화예술을 포함한 관광, 교육, 복지, 경제 등 다양한 분야와의 연계를 통해 충청북도 전반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필수적인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으로, 그 제정의 타당성에 이견이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웰니스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충청북도 웰니스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웰니스관광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자연환경과 특성을 활용한 웰니스관광을 활성화하고, 충청북도민과 관광객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웰니스관광”이란 관광객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회복과 증진을 목적으로 자연환경, 전통요법, 대체의학, 웰니스 시설, 힐링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관광·보건·웰니스 분야가 융합된 형태의 관광활동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웰니스관광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웰니스관광 육성을 위하여 웰니스관광사업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웰니스관광 사업) 도지사는 웰니스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니스관광 프로그램 및 관련 상품·콘텐츠 개발
2. 웰니스관광 기반 구축 및 개선

3. 웰니스관광 홍보마케팅 및 인식 제고
4. 웰니스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
5. 웰니스관광 지역 연계 및 주민소득 창출 사업
6. 웰니스관광 컨설팅 및 연구사업
7. 그 밖에 웰니스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웰니스관광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충청북도의 우수한 관광지, 대표적인 시설 및 관광상품을 충청북도 웰니스관광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웰니스관광의 지정 및 취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웰니스관광 지정이 부적절하거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시설 및 관광상품 등을 운영·판매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홍보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웰니스관광의 기반구축을 위하여 웰니스관광자
원, 사업체, 인력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
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웰니스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부처 및
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
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